

전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내규

제1장 교과목

제1조(전공학점이수)

- ① 석사과정생은 총 24학점 중 해당전공과목을 12학점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 전공 및 타 학과 개설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박사과정생은 총 36학점 중 해당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 전공 및 타 학과 개설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추가학점이수)

- ① 비동일계 석사과정 입학자는 '교육학개론'(2학점)과 '교직 및 전공과목'(10학점)을 합하여 총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비동일계 박사과정 입학자는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전공 관련 과목 18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필수과목)

- ① 석사과정생은 교육학연구방법론과 교육통계분석론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박사과정생은 교육학연구방법론과 교육통계분석론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고급통계학으로 인정되는 과목 중 1과목 또는 질적연구방법론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 중에 상응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안 하에 면제받을 수 있다.

제2장 종합시험

제1조(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본인이 이수한 전공과목 중 2과목과 교육학 연구방법론,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본인이 이수한 전공과목 중 4과목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수료학점을 3분의 2이상 이수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간에 종합 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위원) 학과주임교수는 학생들이 신청한 강의 담당 교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 배점, 평가기준 등을 전공별로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5조(합격점수 인정)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제7조 학과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